

의 정 정 보 2011-6호

1. 최근 제·개정 주요 법률 2
2.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24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84
4. 행복한 책읽기 108

모 두 보 기

최근 제·개정 주요 법률

지방공무원법 (3)
자동차관리법 (5)
지역특화발전지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병역법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
소비자기본법 (21)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25)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34)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42)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49)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57)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64)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69)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 (85)
실종 어린이, 쉽게 빨리 찾는다 (87)
부모공무원, ‘일과 가정’의 병행이 쉬워진다 (92)
지역 특산품·공예품, 지적재산 등록 추진 (96)
정부, 사이버 안전·비상 대비 기능 강화 (101)
공공디자인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시킨다 (104)

행복한 채워기

식량의 종말 (108)

최근 제·개정 주요 법률

1. 지방공무원법 3
2. 자동차관리법 5
3. 지역특화발전지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9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5. 병역법 16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
7. 소비자기본법 20

[공포 2011. 5. 23 시행 2011. 5. 23]

1. 개정 이유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하며,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 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이 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신설).

- 다. 「국적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 라.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안 제27조, 안 제32조, 안 제35조제1항, 안 제80조).
- 마.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 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안 제63조제2항제4호)
- 사.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안 제65조의2).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5조의2제2항, 제41조, 제63조제2항제4호, 제64조제8호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1. 5. 24 시행 2011. 11. 25]

1. 개정 이유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자 및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안 제48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

차안전도 향상 및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등에 관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위한 장비 및 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제6항, 제81조 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제82조).

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마.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8항).

바.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사.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
(안 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아.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5조의8 신설).

자.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9부터 제35조의11까지 신설).

차.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처벌 규정 마련(안 제52조,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

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현황분석, 국제조화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운용, 추진체계 및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신설).

파.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의 존속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77조의3 신설).

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

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대포차 유통 및 운행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9조제4호 및 제80조제2호·제3호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1. 5. 24 시행 2011. 8. 25]

1. 개정 이유

지역특성과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특구의 선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제출기간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승인기간 확대(안 제7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 1)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우선 지정된 후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이 짧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 2) 특구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3)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

공하여 우선특구지정제도의 이용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안 제32조제2항 신설)

1)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 없거나 소규모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구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특구지정절차의 간소화로 특구지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등(안 제36조의7제2항, 제36조의14 및 제36조의15 신설)

1) 지역특성이나 특화사업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을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을 2만 제곱미터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용지 분할면적 등의 완화로 지역특화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 수용·사용 요건 완화(안 제36조의12제2항)

1)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기준이 엄격하여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3)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1. 5. 24 시행 2011. 11. 25]

1. 제정 이유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전력·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인증·표준화 및 비용 지원,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2)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

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안 제12조 및 제14조)

- 1)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공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 2)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능형전력망 기반의 구축사업,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정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에 대한 인증(안 제15조 및 제16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안 제18조)

- 1) 지능형전력망 사업 초기에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을

보급 및 사용하는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적으로 홍보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장치 마련(안 제22조, 제26조 및 제28조)

1)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는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3)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안 제23조)

1)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

요함.

- 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1. 5. 24 시행 2012. 11. 25]

1. 개정 이유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하며,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복무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안 제12조)

- 1)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치유를 요하는 경과관찰 질환자가 고의적으로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2)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확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나.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안 제65조제3항 신설)

- 1)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2)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에는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안 제77조의2 신설)

- 1)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속임수를 써서 신체검사만 통과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2)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1. 5. 19 시행 2011. 8. 20]

1. 개정 이유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간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계의 설정·유지 시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법률에서 신용정보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조제1호).
- 나.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다.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52조제3항제4호의2).
- 라. 제32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

받은 자”로 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하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제5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1. 5. 19 시행 2011. 8. 20]

1. 개정 이유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제품용량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용량 등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동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조정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문자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 방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7호 신설).
- 나.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 다. 한국소비자원의 위법사실 통보의무 면제사유 규정(안

제56조단서 및 각 호 신설)

- 1) 현행 제도상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관계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하는 등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3) 위법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위법사실 통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 면직 사유 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정함(안 제62조).

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조정부 제도 도입(안 제63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 1)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분쟁조정회의와 위원수가 적은 조정부로 구분하여 소비자 피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3)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안 제68조제7항)

- 1) 집단분쟁조정의 조정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규정대로 30일로 하되, 필요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총 90일 이내).
- 3)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 및 권한(안 제68조의2 신설)

- 1)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표당사자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 선임·변경·해임에 관한 사항과 대표당사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3)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1.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25
2.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34
3.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42
4.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49
5.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57
6.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64
7.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69

1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1. 제정 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확산 추세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동시다발적인 체결로 농수산물의 국제교역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감소와 가격하락이 심화되어 농가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강원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수출농가 교육·컨설팅, 해외시장개척 등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농수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농수산물수출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도지사가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 농수산물수출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아.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 자. 농수산물수출촉진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강원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어업생산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라 함은 중앙정부 및 강원도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4.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
6. 기타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내·외 수출입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선·후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와 업체간 네트워크 (Net-Work)형성에 필요한 사항 등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우리도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농수산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해외 관측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도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도지사는 적극적인 농수산물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기타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촉진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강원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수출촉진시책에 대한 자문
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3. 기타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 5호 (생략)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호 ~ 11호 (생략)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 3호 (생략)

4.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호 ~ 16호 (생략)

제16조(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 판매점의 설치·운영

2호 ~ 6호 (생략)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농어업·농어촌 진흥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도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어촌지역개발, 자립기반 확충,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해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 3호 (생략)

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축산물 및 수산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5호 ~ 14호 (생략)

1. 제정 이유

-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1명으로, 2008년보다 19%나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이며, 경기도는 16개 광역시·도 중 자살사망자 수가 2007년 2,433명, 2008년 2,691명으로 전국 최고로 매년 증가하여 경기도 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3.31, 제18516호)에 따라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도민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와 자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규정하였으며(안 제3조제1항)
- 나. 자살의 예방 및 구조를 취하던 도민이 사망·부상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다. 도지사는 법 제8조에 의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제4조)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을 위하여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제5조)

마.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법 제 12조에 의한 전문 조사 · 연구기관에게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고, 상담 ·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관 ·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8조 제1항 및 제3항)

사. 도지사는 자살미수자와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전문 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아.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1일 제정되고 그 시행이 2012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토록 함(안 부칙)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경기도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제6조(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1부지사, 보건복지담당국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인
3. 자살예방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주

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유

-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도지사는 도민의 정보이용과 문화·독서활동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도지사는 도서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작은도서관 진흥 활성화를 포함하여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 설치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음 (안 제6조)
- 바.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갖춘 등록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이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0조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경기도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등)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도서관법」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개정 2009.3.25>)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9.2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다.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 · 휴게실 · 복도 ·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3. 제4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4.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종류와 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제정 이유

- 대민행정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공직사회 청렴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렴분야에 대한 별도의 시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행정처리 과정에 부패방지 및 청렴 진작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상의 명칭은 “경기도 청렴대상” 이라 함
- 나. 수상 대상은 기관·부서·단체·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내 청렴도 최우수 시·군 1, 전국 청렴도 최우수 도 소속 실·국·본부·원·소 1, 공무원단체 1, 도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함
- 다. 수상자는 감사관의 현지 확인 등의 검증과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함
- 라. 경기도 청렴대상의 선정 등을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마.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선진지 시찰 등의 부상과 특별승진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경기도 청렴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기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청렴대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수상인원 및 대상) 청렴대상의 수상 인원은 매년 기관·부서·단체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내 청렴도(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최우수 시·군 1
2. 전국 최우수 청렴도를 인정받은 도 소속 실·국·본부·원·소 1
3. 도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하는데 적극 기여한 도 또는 시·군 소속 공무원단체 1
4. 도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하는데 적극 기여한 도 소속 공무원 1

제4조(선정절차) ① 청렴대상 수상자는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 받아 도 감사관이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 시장·군수
2. 제3조제2호 : 도 감사관
3. 제3조제3호 : 도 감사관 또는 시장·군수
4. 제4조제4호 : 도 감사관 또는 도 소속 실·국·본부·원·소의 장

제5조(위원회)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도 감사관
2. 도 3급 이상 공무원
3. 경기도의회 의원
4.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매년 수상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때 설치하고, 청렴대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사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패 및 시상금 등) ①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패, 시상금 및 선진지 시찰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관은 6급 이하 수상자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기관·부서·단체의 경우 500만원, 개인의 경우 3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선진지 시찰 대상자는 수상 기관·부서·단체에서 추천된 공무원 가족과 개인수상자 가족으로 한다.

제10조(수상의 취소)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하며, 상패 및 시상금은 반환 조치하고,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제11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10장 능률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경기도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1975.3.2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전문개정 1975.3.25.]

제5조(표창자)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소. 원. 실. 국장. 시장. 군수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 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이상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7.>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 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유

- 경북은 임야면적이 70.6%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은 취약하고 산촌지역은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이에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과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산촌의 소득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임업과 산촌의 발전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2조)
- 사업의 지원, 임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산림사업 진흥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임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 시장개척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전문 임업인의 양성과 임업인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회의,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 및 산촌진흥계획 등)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적·환경적 특성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임업인의 복지증진과 전문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 유관기관·단체,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임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 시장·군수, 유관기관·단체 및 임업인은 임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사업 진흥구역 지정) ①도지사는 산림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권역별로 산림사업 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구역에서 시행하는 산림소득·생태관광시설·임도 등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산물 판로개척) 도지사는 유망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 임업인 양성) ① 도지사는 임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임업경영인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는 임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업인의 역할) 임업인은 임산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먹을 거리를 생산하고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영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산촌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환경해양산림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

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업 및 산촌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업 및 산촌진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 기반조성 및 산촌소득 증대방안에 관한 사항
4. 임업기술과제 선정 및 시상결정에 관한 사항
5. 임산물 수출, 가공, 유통,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산림기본법」

제7조(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독립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개발사업"이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09.6.11>

1.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정 이유

- 고품질 임산물 생산, 신기술 개발 등 산림분야 발전에 공헌한 관련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 함으로써
- 임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북의 산림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상의 명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상부문을 단체·개인 2개 부문으로 하며, 시상 인원은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규정함(안 제3조)
-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산림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산림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단체로 규정함(안 제4조)
-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토록 함(안 제6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방법과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시상 시기는 매년 산의 날(10월 18일)로 하고,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함(안 제11조)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역 산림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 임업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산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단체부문

2. 개인부문

②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 산림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관련 기관·단체로 한다.

②수상후보자는 산림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③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시장·군수와 도단위 산림관련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산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위촉직 위원은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위원의 자격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산림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림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①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산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산림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정 이유

- 복지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복지옴부즈만 설치 및 복지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복지옴부즈만의 업무관할 기관 및 자격요건,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복지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방법, 권고, 의견표명, 조치결과 의 통보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복지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복지행정에 대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옴부즈만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복지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복지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옴부즈만은 1명을 두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제5조 각 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한 복지분야 행위에 대하여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복지분야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3. 복지분야 행정제도 및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
4.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5. 복지분야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6. 복지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7. 그 밖에 복지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 처리 지원
- ② 읍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4조(읍부즈만의 직무관할 제외)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경찰·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읍부즈만 관할기관) 읍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자치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 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로부터 복지분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

제6조(옴부즈만의 자격 요건 등)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사회복지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8.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9.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시민사회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옴부즈만의 채용계약, 채용기간 등 채용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옴부즈만의 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8조를 위반하여 옴부즈만 이외의 직을 겸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옴부즈만의 겸직금지) ①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옴부즈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부즈만이 2명,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수당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그 내용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문위원장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시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시의 복지분야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읍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③ 고충민원의 신청은 대리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이첩)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복지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옴부즈만은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 조사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ombudsman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권고 및 의견 표명) ① ombudsman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충민원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조치결과의 통보) ① 제15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ombudsman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통보받은 고충의 조사결과를 고충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옴부즈만은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17조 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 사유

② 기타 고충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민원조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조사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공인의 사용) ① 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등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대구광역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운영상황 제출) 읍부즈만은 매년 12월말까지의 활동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읍부즈만으로 임용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

관을 말한다.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 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노령연금법」
- 며.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 85
2. 실종 어린이, 쉽게 빨리 찾는다 87
3. 부모공무원, '일과 가정'의 병행이 쉬워진다 92
4. 지역 특산품·공예품, 지적재산 등록 추진 96
5. 정부, 사이버 안전·비상 대비 기능 강화 101
6. 공공디자인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시킨다 104

1.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

□ 2011년 5월 20일부터는 「민원24」(minwon.go.kr)를 이용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민원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에서 행정기관 최초로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서비스 개시로 토지대장 등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560여종의 모든 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소정의 수수료도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 민원수수료(예시) : 토지(임야) 대장 등본 발급(300원),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1,000원)

* 정보공개수수료(예시) : 원본 복제(1매 250원+1매 추가시 50원),
전자파일 복제(10매 200원 + 5매당 추가 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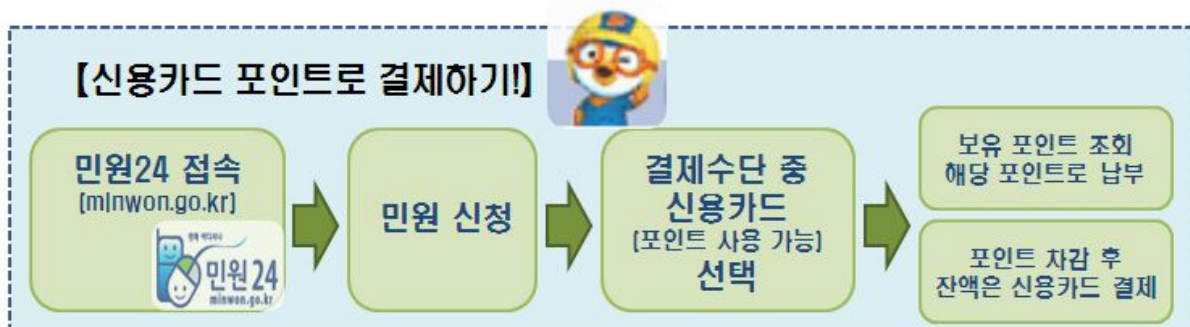
□ 이번 포인트 결제 서비스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은행·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이상 가나다순) 등 시중 주요 9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한 국민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 향후 농협·전북은행 등 2개 기관의 카드에 대해서도 추가 서비스될 예정이다.

□ 서비스 이용방법은, 「민원24」의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되며,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 특히 개별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결제화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

결제방법선택	> 신용카드(포인트사용가능) > 계좌이체 > 휴대폰 > 선불카드 > ARS결제	
결제금액	400원	
카드유형	☒ 개인카드 ☐ 법인카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카드인경우만 입력)	
카드번호	1111 - 2222 - 3333 - ☐ 결제정보저장 동의 ※본인소유의 카드만 사용가능 합니다.	
카드유효기간	2020 년 01 월	
카드비밀번호	XX (앞 두자리 - 개인카드인경우만 입력)	
포인트 사용여부	☐ 사용안함 ☒ 사용 사용가능한 포인트 : 1,350 조회	



-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민원24」 뿐 아니라 정부기관의 개별 온라인민원창구 등에 카드 포인트 결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실종 어린이, 쉽게 빨리 찾는다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정보 사전등록, 실종아동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실종 아동 찾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대책은 어린이 등 실종자 신고가 연평균 8.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종합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실종아동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먼저, 금년말까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실종 아동 전문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가 경찰청의 미아찾기 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고,
- 더 나아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 수용자정보도 연계할 계획이다.
- 이러한 종합정보는 경찰 순찰차에 설치된 CCTV 영상 정보 수신 단말기를 통해 전송되어 순찰시에 실시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 영상정보 검색체계를 도입하여 실종 아동의 이미

지 정보를 토대로 자동 인식·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어린이 실종에 대비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문 등 아동 정보를 사전등록하여 활용하기 위한 캠페인도 앞으로 1년간 전개한다.

○ 이는, 본인이 스스로 인적사항을 알릴 수 없는 유아, 지적장애인 등이 실종되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수의 아동이 모여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게 된다.

○ 수집된 정보는 실종 아동 찾기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우선 시범 지자체(2개)를 선정하여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경찰청의 수색활동도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 경찰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1만여명의 인원이 보호시설, 장애인시설, PC방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사각지대 없는 일제수색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 이와 함께 행안부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여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실종아동 보호시설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종합지원대책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실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가족과 함께 밝고 건강하게 커 갈 수 있는 환경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종아동 등 신속한 찾기 지원대책

I 실종아동 현황분석

- 아동·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신고가 해마다 증가(연평균 8.8%) 추세에 있어, 이들을 찾기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시급
 - '06년 이후 실종신고는 총 10만8천건이며, 현재까지 미발견자는 531건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1~4
계	신고	108,118	17,470	19,959	18,580	20,463	24,094	7,552
	미발견	531	69	62	36	62	141	161
14세미만 아동	신고	48,547	7,064	8,602	9,470	9,240	10,829	3,342
	미발견	48	7	2	1	1	11	26
지적장애인	신고	33,333	6,872	7,239	4,864	5,564	6,699	2,095
	미발견	340	50	43	13	39	87	108
치매노인	신고	26,238	3,534	4,118	4,246	5,659	6,566	2,115
	미발견	143	12	17	22	22	43	27

※ 실종아동법 제정('05) 이후 통계이며, 그 이전 발생건도 많으나 관리되지 않음

- 실종자에 대한 소관부처가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으로 다원화되고 관련정보가 분산 관리되어 실종자 찾기업무 처리가 지연

II 신속 찾기를 위한 주요과제

- 1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일제수색 강화 (경찰청)
 - 보호시설, PC방,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합동수색 실시
 - (참여기관) 경찰, 지자체, 가족, NGO, 해경 등 1만여 명
 - ('11년 일제수색 결과) 1/4분기 343명, 2/4분기 792명 발견
 - 하반기부터 투입인력, 수색장소 확대 등을 통해 수색 대폭 강화

② 실종에 대비한 아동정보 사전등록 추진 (지자체, 경찰청)

-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문 등 아동정보 사전등록 캠페인 실시('11.5~'12.5) ※ 본인의 의사전달이 어려운 유아, 지적장애인 등에 효과적
 - (채취)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수아동 집합시설 중심으로 방문 채취
 - (활용) 보호아동 접수 시, 사전 등록된 지문과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
- 시범 지자체(2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후, 점진적으로 전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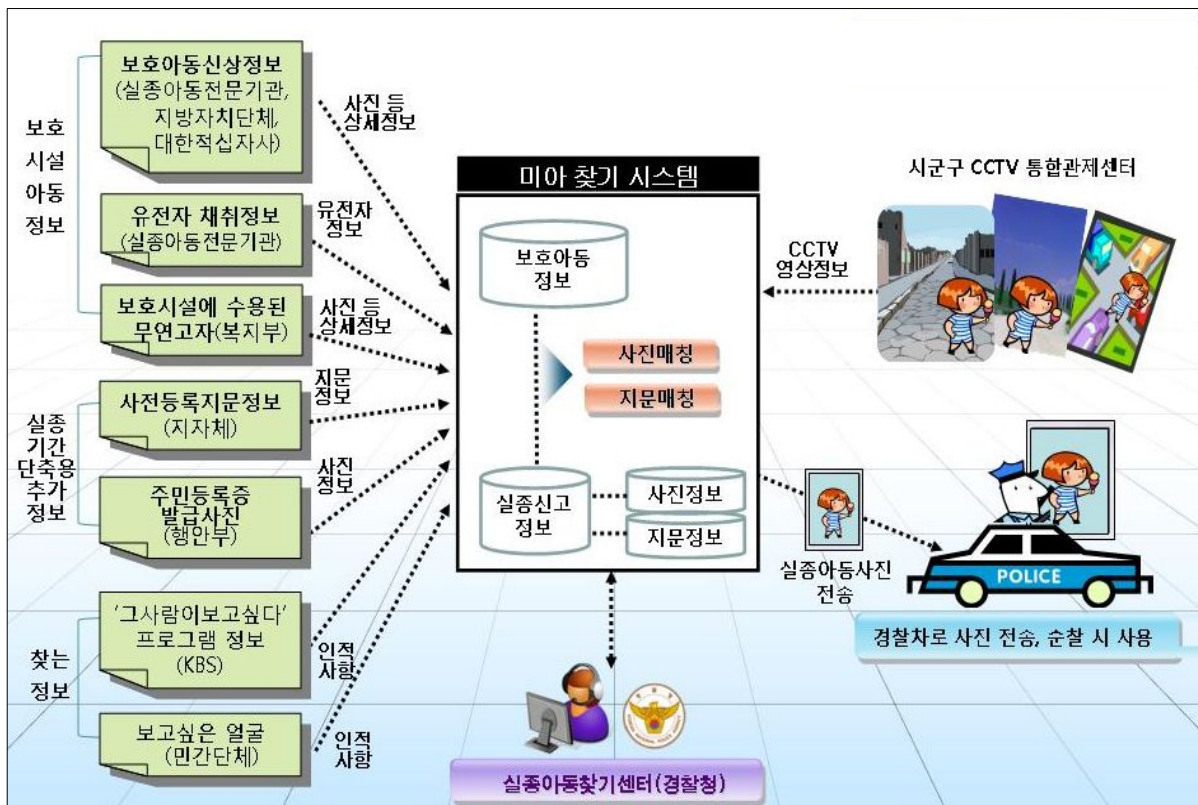
③ 첨단IT기술을 활용, 실종자 정보 통합 추진 (행안부, 경찰청)

- 무연고 아동의 실종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의 정보를 경찰청의 미아찾기시스템과 연계
 - 1단계 연계대상 : 실종신고 정보 및 무연고 아동정보
 - ※ 보호·유전자채취·사전신고아동정보, 치매노인 인식표정보 등 총 36.5만건 연계
 - ※ 행안부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41억 투입,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
 - 2단계 연계대상 : 복지부의 보호시설 수용자정보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 첨단 사진매칭기법을 활용, 실종자의 사진을 비교검색
 - 무연고 아동의 사진을 실종신고 당시의 사진과 비교
 - 실종아동이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제출한 사진을 실종신고 당시의 사진과 비교
 - ※ (현재) 경찰청에 지문정보 제공 → (개선) 사진정보를 추가 제공

④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이용한 정밀검색 실시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 장기적으로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 영상정보 검색체계 도입
 - 실종 아동의 이미지 정보를 토대로 CCTV 영상정보를 형태, 색, 특징 등으로 자동 인식,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경찰 순찰차(3,675대)에 CCTV 영상 정보 수신 단말기 설치
 - 실종신고된 아동정보를 순찰차에 송출하고, 인근지역 순찰 시 주변의 아동과 영상단말기의 실종아동 사진을 비교·탐색
- ※ 현재 안양시에서 시범 적용 중(25대)

< 향후 목표 구성도 >



3. 부모공무원, '일과 가정'의 병행이 쉬워진다

-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육아휴직 대상확대, 기능10급 폐지,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 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제도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첫째, 육아휴직 등 공무원 휴직제도를 정비했다.
-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까지였던 것이 만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기에도 부모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가능하여, 입학연령대 아이를 둔 많은 공무원들

의 마음을 애태웠었다.

- 또한 그간 출산휴가 기간에는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출산휴가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 출산휴가 기간에는 휴가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들이 분담

- 앞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맘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 한편, 질병휴직이 금지되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 공무로 인하여 질병을 얻는 경우에도 면직해야 하던 불합리한 경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 둘째, 기능10급과 고용직 제도를 폐지했다.

- 우선,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능직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시되어온 기능10급을 폐지하였다.

- 그간 일반직 공무원은 9계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기능직 공무원은 10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승진과 보수상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킴에 따라 일선에서 국민과 접촉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능10급 폐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

- 또한 행정환경과 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제도를 폐지했다.
- 고용직공무원은 급사·사환·청소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처리하여 왔으나,
- 행정환경이 전산화·기계화되고,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민간 위탁 영역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소멸하게 되었다.

※ 고용직 제도 폐지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 3개월 후부터 시행

□ 그 외에도 각종 제도와 인사용어를 정비했다.

- 우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예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공무원은 국가안보, 보안·

기밀, 외교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실제로 경력을 바탕으로 경쟁채용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없이 채용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특별채용’의 용어를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게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였다.

※ 경력경쟁채용 용어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12.1.1 (지방은 공포일 3개월 후)부터 사용

- 한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된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여성’의 용어로 변경했다.

4. 지역 특산품·공예품, 지적재산 등록 추진

- ‘순창 고추장’·‘진도 홍주’·‘이천 도자기’·‘남원 목기’처럼 지역 이름과 함께 잘 알려진 특산물이나 공예품에 대한 지적 재산 등록이 추진된다.
 - 이를 통해 위와 같은 상품들이 브랜드화되고, 그 이익이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 맹형규)와 특허청(청장 : 이수원)은 지역 핵심자원(특산물·공예품)의 권리화·자산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MOU)의 주요내용은
 -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및 권리화와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
 -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지자체 평가 및 공무원교육원에 지식재산권과정 개설 등이다.
 - 또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은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우선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핵심자원에 대해 향후 3년간 지식재산 등록을 추진하게 된다.

- 지역 핵심자원은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 최초로 실시한 향토자원 조사로 발굴된 자원(56,182건)중에서
 - 부가가치가 크고 사업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원을 분류(핵심, 유망, 잠재)하여 나온 것이다.

※ 자원분류(전통기술, 특산물) : 핵심(5%), 유망(10%), 잠재(20%)

- 지식재산 등록은 공공성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위주로 100여건을 선별하여 추진하게 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자치단체에서 지식재산의 권리화·자산화를 강화하게 되면 국제 경쟁력 제고, FTA 등 세계환경 변화 대응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붙임 : 1. 지역 핵심자원의 지식재산 등록 지원 사업 개요
2.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추진 개요

참 고 1

지역 핵심자원의 지식재산 등록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10년도 전수조사한 향토자원중 부가가치가 크고 사업성이 높은 향토자원(핵심자원)
- 등록목표 : 100여건(매년 30여건)
- 등록 지식재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위주 등록 추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우선 추진 사유

- ◆ 지역의 브랜드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직접 기여
 - 품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를 통한 가격상승 및 소득증대 효과가 큼 (FTA 등 국제화시대에 수출대응력의 제고)
- ◆ 등록에 따른 혜택이 생산·가공자 단체 등 다수임
 -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 및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출원 불가
- ◆ 출원 준비 자료 작성에 많은 비용 및 시간의 소요로 지원의 실효성이 큼
 - 출원 준비자료 작성에 평균 6개월, 비용은 평균 20백만원 소요

2 추진계획

- 추진방법 : 특허청 및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 특허청과의 협력 분야
 -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의 분쟁 대응 지원
 -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

3 사업효과

-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및 보호(FTA 대응 등)
- 자치단체의 자산화를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 상품의 전략적 개발·관리로 부가가치 제고 및 매출 증대

□ 추진경과

- '10 향토자원 국가 최초 전수조사(9~12월) : 56,182건 발굴
 - ※ 향토자원 조사 참여 인원 : 청년 미취업자 등 2,258명
- 향토자원의 DB 구축 : '11. 1(지역별, 자원별 검색 기능 등)
- 향토자원 분류(핵심 5%, 유망 10%, 잠재 20%) : '11. 1~3월
 - ※ 핵심자원 선정수 : 347건(기술 131, 특산물 216)

□ 사업화 계획

① 향토자원 육성 기반 구축

- 향토자원의 DB 고도화 추진(5~6월)
 -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구축중인 시스템과 연계 구축
- 향토자원 관련 부처간 연계 협력 체제의 구축(5~6월)
 -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② 향토 핵심자원(기술분야)의 사업화 지원

- 20개 사업/3년간('11~'13) 총 100억(사업당 5억/특교 2.5, 지방·자부담 2.5)
 - ※ 사업분야 : 공예자원(도자기, 철기, 옹기, 보석, 목기, 유기 등), 전통기술(한지, 옷칠, 염료 등), 무형문화재(장인, 명인 등) 등
- 생산시설 디자인 개발 등 H/W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S/W 지원
 - ※ 사업공모결과 : 38개 접수/5월중 평가 및 선정 계획

▶ 연도별·단계별 추진

· '11 : 기반구축(생산 설비 등 특교 20억/사업당 2억), '12 : 사업화(제품 용가·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특교 20억/사업당 2억), '13 : 마케팅(홍보, 수출지원 등 특교 10억/사업당 1억)

③ 향토자원의 권리화 추진

- 3년간('11~'13) 100건 등록/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위주(특허청 공동)
- 『향토자원 브랜드 대상』 개최(7월, 중기청과 공동)

④ 향토자원의 국제화 추진

- 『시·도 공동 해외 전시·상담회』 개최(미국/8. 13~8. 18, 일본/9. 28~9. 29)
- 행안부 해외주재관의 향토 자원 시장개척·홍보요원 활용('11. 1~)

5. 정부, 사이버 안전·비상 대비 기능 강화

□ DDos·스턱스넷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과 천안함 피격·연평도 사태 등에 따른 정부의 비상대비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5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비상계획 기능 보강을 위한 관계부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 통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 먼저, 최근 농협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 공격으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서버 수 및 관련기구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3개 부처에 45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 보안관제센터 설치(11개 부처) : 26명, 보안관제센터 미설치(12개 부처) : 19명

○ 아울러, 천안함 피격·연평도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중 전담기구나 인력이 없는 부처를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비상계획 전담기구 또는 인력이 없는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성격·유사시 역할 등을 고려하여 8개 부처에 전담기구 설치 또는 인력 보강을 통해 비상대비 체계를 강화했다.

* 보강부처(8개)

- 과장급 기구 신설 : 통일부(5급→4급), 식약청

- 전담 인력 : 총리실, 금융위, 보건처, 통계청, 문화재청, 기상청, 여가부

□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사이버 위협과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안전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정보보호 및 비상계획 인력 보강 내역

□ 정보보호 인력 보강 내역

☞ 인력보강 기준

- ✓ 사이버관제센터 설치 부처 : 기존인력을 활용하되 센터당 3명 확보
- ✓ 사이버관제센터 미설치 부처 : 최소한의 전담인력을 확보

○ 사이버관제센터 설치 : 11개 부처 26명

- 기재부(3), 법무부(3), 문화부(3), 환경부(3), 고용부(3), 기상청(3), 방통위(3), 관세청(2), 복지부(1), 국토부(1), 특허청(1)

○ 사이버관제센터 미설치 : 12개 부처 19명

- 통일부(1), 행안부(8), 농식품부(1), 총리실(1), 금융위(1), 문화재청(1), 식약청(1), 공정위(1), 법제처(1), 병무청(1), 방재청(1), 산림청(1)

*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 7명 포함

□ 비상대비 기능 강화 내역 : 9개 부처 2담당관 신설, 8명 증원

○ 전담기구 신설 : 통일부(5급→4급), 식약청

○ 전담인력 보강 : 5급(총리실, 금융위, 보훈처, 통계청, 문화재청, 기상청) 6급(여가부)

6. 공공디자인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시킨다

-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도리돌 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이, 부산 북구에는 ‘구포 명품 피아노 특화거리’가 조성된다. 그 외에도 서울 종로구 등 총 10개 시군구에서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이들 지역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4억원,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4억원의 매칭펀드로 각 8억원의 사업비가 조성된다.

◆ 도리돌 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경기 포천시 이동면 도리돌길 61 일원)

- 이동막걸리, 이동갈비의 본고장으로 대외 인지도가 높은 곳이며 마을 주민 스스로 ‘사단법인 도리돌지역활성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주민의 참여의지와 역량이 높은 지역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로정비 및 화단조성, 스쿨존내 안전휀스, 폐가정비, 주거공간내 텃밭정비, 안내사인물을 설치하고,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을 위해 지붕, 담장개보수, 마을쉼터 조성, 상징탑 정비, 골목길 정비 및 상가 간판 정비

◆ 구포 명품 피아노 특화거리(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지길 33 일원)

- 부산 최대의 피아노 업체가 집중된 상업가로이나 시설의 노후화, 인접한 구포역과의 연계성 미흡 및 특색과 매력을 찾기 힘들
- 피아노로 대표되는 디자인 테마거리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도 정비, 상징·홍보시설물 설치, 옥외광고물 정비, 입점업체 주도 영업시설 개선 및 전용 주차장 확보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 도시 및 지역공간 조성사업에 공공디자인을 적용시키는 사업으로서 창의적인 공공디자인의 확산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의 제고와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이번에 선정된 10개지역을 선도모델로 육성함으로써 지자체 공공디자인 정책의 선진화 및 확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특히,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한 이번 공모사업의 심사에서는
 - 공공디자인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제안서 심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공디자인 전문가 그룹인 지역공공디자인 포럼 위원의 중간 점검 및 자문을 통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공공디자인의 체계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의 지역공공디자인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 2011년도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심사결과 등

참고 1

2011년도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지역공간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사업기간 : '11. 5 ~ 12월 (8개월)
- 선정방식 : 공모를 통한 10개 시군구 선정
- 사업예산 : 80억원 (특교세 50%, 지방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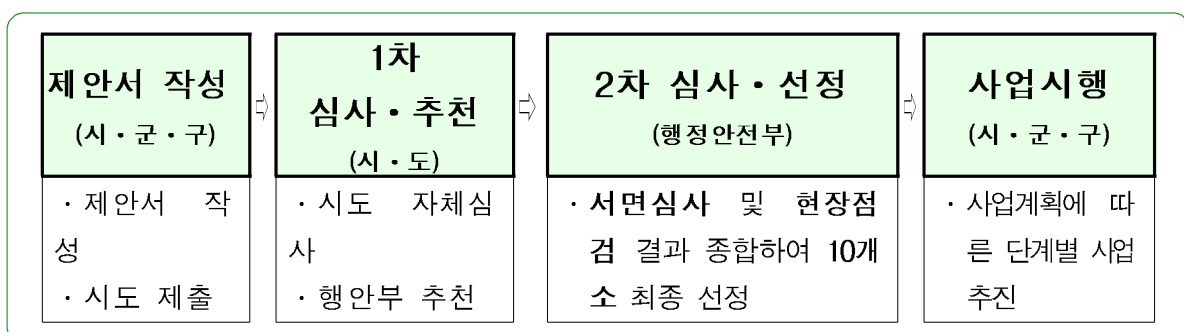
□ 추진방향

- 도시 및 지역공간 조성사업에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
 - 창의적인 공공디자인의 확산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 지역 공공디자인 선도사례 개발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유도
 - 선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수준 및 기획역량 제고

《 사업 예시 》

- ▲ 지역 정주공간 개선사업
- ▲ 가로환경 정비사업
- ▲ 디자인 특화지역 조성사업
- ▲ 안전디자인 적용사업

□ 심사 절차



참고 2

2011년도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심사결과

연 번	시 도	시군 구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주요내용
1	서울	종로구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동네 “모두들 나오세요. ^^”	안전디자인 적용	골목길 커뮤니티 공간 조성(쉼터) 및 안전한 공공시설물 조성
2	부산	북 구	구포 명품 피아노 특화 거리	가로경관 개선	피아노 공방 거리 조성, 가로시설물 정비 사업
3	경기	포천시	도리돌 디자인빌리지 조성 사업	정주공간 개선	주거환경 개선, 디자인특화 마을(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
4	강원	영월군	생활형 공공디자인 사업 “그리움의 향수” 석향	정주공간 개선 및 안전디자인 적용	정주공간개선(공원조성, 건물외관정비), 안전디자인
5	충남	공주시	공주시 C3 Space Design Plan 옛 읍사무소 건물에 문화적 공동체 공간 조성	디자인 특화지역 조성	근대건축물(옛 읍사무소)을 활용한 문화 공간조성, 공원 등 휴식시설조성
6	전북	전주시	전주부성 골목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 특화지역 조성	골목길 연결 네트워크, 소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벽면 디자인
7	전남	순천시	편안하고 정겨운 역전마당 만들기	디자인 특화지역 조성	역전마당의 가로경관 개선, 옥외 광고물 개선 등
8	경북	영주시	매듭과 타래를 푸는 주인공의 소망	정주공간 개선	주민쉼터 조성, 공원 및 외부공간 연계사업 등
9	경남	거창군	디자인이 살아 숨쉬는 희망창조거리 조성	디자인 특화지역 조성	테마거리(젊음, 체험, 음식), 공원 조성, 차없는 문화거리 조성
10	제주	제주시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	정주공간 개선	옛 제주성곽 주변의 정주공간과 연계한 구도심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식량의 종말

저자명 : 폴 로버츠

출판사 : 민음사

출판년 : 2010년

페이지 : 522

가 격 : 25,000원

■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결박된 식품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구제역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왜 구제역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먹을거리와 현대 식품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비단 구제역뿐이 아니다. 광우병, 조류 독감, 배추 파동, 김치 파동, 정크푸드, 비만, 기아, 대형마트에 이르기까지 먹을거리를 둘러싼 수많은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상품 경제 시스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베스트셀러 『석유의 종말』의 저자 폴 로버츠는 풍부한 자료를 참고하고 관련 인물들을 폭넓게 인터뷰해, 식품의 배후에 놓인 이 같은 경제학적 현실을 생생하게 설명한다. 농부

와 가축 생산자는 물론이고 몬산토 같은 투입재 회사, 카길 같은 상품 거래 업체, 네슬레와 크래프트 같은 가공업체, 월마트와 맥도널드 같은 소매업체와 식품 서비스 회사 등이 세계적 식품망 안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연결 고리를 살핀다. 로버츠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며, 비만, 만연하는 식중독균, 지속되는 기아, 수출 중심 농장으로 바뀌는 제3세계 황무지 등 얼핏 별개로 보이는 문제들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현대 식품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고 수송하는 이 식품 시스템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구제역도 오늘날 식품 시스템의 위기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가축을 더 크고 빠르게 키우기 위해 목장과 헛간 앞마당에서 기르던 가축을 우리와 축사로 옮긴다. 하지만 가축 밀집 사육 시설에서 집중 사육하는 방식은 대규모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가축을 빨리 키우려고 비타민과 아미노산, 호르몬, 항생제를 사용한다. 가축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주입한 결과 박테리아의 항생제 저항력도 높아져, 가축을 매개로 한 질병 발병률도 높아진다. 이런 현상 뒤에는 물론 최저가를 요구하는 대형 가공업체와 대형마트, 그리고 소비자들의 가격 압박이 있다.

■ 식품 시스템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대형마트의 식료품 코너는 언제나 풍성하다. 이 식품 시스템에 붕괴가 임박했다는 조짐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 더욱 신선하고 다양하고 값싼 식품을 원하는 시장을 무리해 가며 만족시킨 결과, 식품 시

시스템은 점차 위기에 처하고 있다.

똑같은 가축 수천 마리가 밀집된 사육장, 동질한 작물들이 가득한 공장식 농경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곳에는 화학 비료가 대거 흘러 들어오고 화학 물질이 대거 흘러 나간다. 토양은 침식되고 산림은 경작지로 개간 중이며 농장은 쇼핑몰로 변신했다. 지하수면이 가라앉으면서 관개용 우물이 점점 깊어지고, 임금이 낮아질수록 항공 화물 노선은 점점 길어진다. 결국 마진은 하락하고 재고 수준은 낮아져 갈수록 작업 처리량이 늘어났으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졌다. 공급망은 길어진 동시에 간소화됐다. 이 식품 경제가 감당 못할 수위의 ‘사건’과 맞닥뜨린다면 현 시스템이 중단되고 선반과 진열대가 깨끗이 정리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① 먹을거리 지역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세계적 혹은 국가적 차원의 식품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식품을 더욱 활용하는 방향으로 식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들이 제품이나 원료를 지역 내에서 구한다면 비용은 줄어든 것이며, 특히 식품 안전과 영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류 식품 공급 방식에 대한 대안을 활발히 모색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에서는 이런 방식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② 청색 혁명 — 어류 소비에서 대안을 찾자

육상 가축은 생물학 또는 생태학 면에서 제약이 있으므로, 현재 활짝 열린 미개척 영역인 바다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얻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청색 혁명’이라고 부른다. 어류는 본래 사료 전환 효율이 뛰어나다. 냉혈동물이고 수력의 영향을 받아 그 무게를 물로 지탱하므로 어류는 물에 사는 동물보다 훨씬 적은 칼로리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칼로리를 무게를 불리는 데 쓸 수 있다. 어류는 또 물에 사는 그 어떤 가축보다도 산업화에 적합하다. 대량으로 기를 수 있고 양식 성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③ 육류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식품 시스템의 현 위치와 지향점 사이에 놓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식품 수요, 그중에서도 육류 수요를 줄이는 일이다. 매우 생산적인 혼작 농업과 양식업이 대거 확산되고 유전자 조작 곡물 사료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약진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육류 소비 추세를 뒤엎고 세계의 일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을 낮추지 않는 한 식품 시스템의 위기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④ 농업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현대 식품 경제는 점차 동질하며 밀집된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 경작지와 공장을 비롯, 농업 부문 전반에서 다양성을 잃었으며, 경제적 생존이 힘들고 붕괴에 더욱 취약한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농업 정책을 개혁하라고 의회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또 의회가 대안 농업에 연구

자금을 늘리도록, 학교 운영위원회가 점식 식단 운영 방침을 개선하고 정크푸드를 내다버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⑤ 식품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식품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숲으로 들어가 열매를 따 먹으며 산다거나, 생산량이 낮고 질병이 만연하며 불순물이 넘치고 끝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과거 식량 경제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음식 조리를 다른 이의 손에 넘겨주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점차 경제 모델에 내맡기면서 식품의 몰락을 자초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발전을 위하여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3부 중 1부에서는 식품 시스템의 기원과 양상을 파헤친다. 1장 ‘진보에 굶주리다’는 식품 경제의 배경 이야기로 육식의 기원부터 처음 등장한 농업 혁명까지, 그리고 18세기 식량 부족으로 인한 멸종 위기와 식품 생산 산업의 등장으로 부활한 이야기를 다룬다. 2장 ‘쉽게 얻는 칼로리’에서는 식품의 산업화를 다룬다. 세계적인 대형 식품 회사 네슬레의 운영 방식을 살피면서, 식품 원료가 분해되고 재결합하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상당 부분 통제하게 되지만 음식에 대한 더욱 큰 통제권은 식품 산업에 넘기게 된 현실을 짚는다.

3장 ‘하나 사면 하나가 공짜!’에서는 소매 혁명을 살핀다. 이를 계기로 대형 식료품 기업이 전례 없는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공급망을 장악하고, 식품 생산뿐 아니라 식품

자체를 변모시킨 저비용 대량 생산 모델을 선보였음을 밝힌다. 4장 ‘고장난 저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여파를 다룬다. 영양가 없는 가공 식품과 더불어 과잉 생산을 지향하는 식품 시스템이 낳은 비만, 당뇨 등의 건강 문제를 짚어 본다.

2부에서는 식품 산업의 영향을 폭넓게 살핀다. 5장 ‘세력을 키우다’에서는 세계 식품 무역의 성장을 개괄한다. 식품 무역은 산업주의처럼 상당한 혜택을 주지만 새로운 위험 요소도 낳는다. 손쉬운 질병 매개체,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취약성, 미국, 유럽, 브라질, 중국 등 소수의 식품 강대국이 농업 생산 접근을 두고 벌이는 경쟁을 다룬다. 6장 ‘기아의 종말’에서는 풍요의 역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세계 기아 문제를 보여 주고, 지나치게 풍요로운 시대에 인구 10억 명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식량 경제에서 소외되는지를 살핀다.

7장 ‘식품의 반란’에서는 식중독 전쟁의 변화를 살핀다. 특히 산업화가 전통적인 인류의 적 박테리아를 무찌르면서 의도치 않게 신종 전염병이 발발할 여건을 조성한 점을 다룬다. 8장 ‘미래의 세계’에서는 토지 오염, 농지 부족부터 에너지와 수자원 공급 부족까지 여러 요소들을 탐색하면서, 이런 현실 때문에 현 식품 생산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지나친 육류 중심 식단을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하며 2부를 마무리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식품 시스템 손질이라는 과제를 살핀다. 9장 ‘마법의 약’에서는 차세대 식품 시스템 전쟁에서 두 가지

주요 주장인 유전자 변형 식품과 유기농 식품을 비교하고 둘 다 미흡한 면이 있음을 밝힌다. 10장 ‘식량 싸움’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다른 식품 대안으로 확장해, 각 대안이 중요한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현상 유지 세력의 저항과 마주하고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 장, ‘에필로그—누벨 퀴진(1970년대 프랑스 고전 요리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새로운 요리법)’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다룬다.

메 모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1년 6월 10일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 (042) 606-5021 / 팩스 (042) 606-5029